

	총학생회 회칙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1986. 10. 1
		최종개정일자	2016. 11. 11.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총학생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며, 대학인으로서의 전인적 인격함양과 전공분야에서의 자유롭고 창조적 학술연구 및 그 응용방법을 연마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당해 연도 등록을 필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 단, 휴학, 제적 또는 정학 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③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④본회의 회원은 정당한 학생활동에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⑤본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자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치활동의 성격을 넘는 학교 학사행정에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제5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학술 연구 활동

②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각종 봉사활동

④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 자치 활동

⑤민방위활동 · 학교 또는 주변 화재 등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6조(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집행부, 운영위원회, 동아리 연합회를 둔다.

제2장 총학생회

제7조(지위) 총학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기구이다.

제8조(구성) 총학생회는 본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9조(권한) 총학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제10조(의장) ①총학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②총·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 및 궐위 시는 운영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소집) ①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총회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①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결) ①총회는 회원 20%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부학생회장의 탄핵결정에 관한 총회는 회원 20%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13조(지위 및 책임) ①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총학생회장은 학교의 중대사나 학생활동에 관계되는 회의의 학생대표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총학생회장은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활동과 학생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업무 집행에 있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의무를 가진다.

제14조(임기) 총·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6조(선출) ①총·부학생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②총·부학생회장이 동시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17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집행부 각 부서를 통괄한다.

②집행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발언할 수 있다.

④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집행부 각 부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는다.

⑥총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 시 출석하여야 한다.

⑦총학생회장은 학생활동의 중대사안에 관한 의견서를 학교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⑧학생복지를 위해 학교당국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권

⑨본회의 회칙개정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고 확정된 회칙을 3일 이내에 공고한다.

⑩대내·외의 활동에 있어서 본회를 대표한다.

⑪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8조(부학생회장) ① 부학생회장은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11>

② 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승계하며, 궐위 이외의 사유로 총학생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할 때에는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집행부

제19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0조(구성) ① 집행부는 총·부학생회장 및 각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부는 학회장 및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21조(부장의 자격) 각 부장의 자격은 제6장 선거 제40조의 각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집행부는 총학생회장의 총괄하에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② 각 부 사업계획의 수행을 위한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총학생회의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을 심의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총학생회의 자체 예산을 검토 심의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각 부 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차장 1인을 두며, 차장은 부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또한 필요시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얻어 각부 산하에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⑥ 학생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단, 차장은 제외)

⑦ 집행부는 제반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가. 사무부 : 본회의 서무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개정 2016.11.11>

나. 홍보부 : 본회의 대내·외적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다. 학예부 : 학생의 학술활동행사를 지원하며 교육환경사업에 관한 사항

라. 문화부 : 문화, 취미활동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마. 체육부 : 체육행사 및 체육향상과 친선도모 등 체육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

바. 여학생부 : 여학생의 복지활동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

사. 복지부 :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4.3.5>

아. 기획부 : 본회의 모든 활동기획에 관한 사항

자. 사회부 : 학내 질서유지, 건전한 학풍조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및 각 분야에 대한 봉사활동, 화재 등 재난에 관한 구호활동에 관한 업무<개정 2014.3.5>

차. 야간부 : 야간학생에 관한 모든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11>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24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직접선거에 의한 전학과 학회장 1명으로 구성하되, 최고 학년자가 운영위원이 된다. 단, 해당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선출하여 교무입학처와 총학생회로 통보한다.

제25조(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전체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피선거권은 각 학과 학회장으로 한다.

제26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①회칙 개정 발의 및 심의 · 의결권

②학생회비 책정 심의 · 의결권

③집행부에서 심의 제출한 예산안, 결산안, 사업계획 및 그 보고의 심의 와 의결권

④본회의 회계, 서무 및 사업발전에 대한 감사권

⑤총 · 부학생회장의 불신임권

가.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 본 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나. 불신임 결의는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불신임 의결이 되었을 때는 해당 당사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⑥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요구권

⑦기타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요하는 사람

⑧위 업무 및 권한은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28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①정기총회는 매 학기초 · 말 및 총선 직후로 하며, 정기총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 및 총학생회장 또는 의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의결) ①제13조 ①, ②, ③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기타 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장 동아리연합회

제30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한다. 다만, 신규 동아리는 6개월 후 연합회에 가입 할 수 있다.

제31조(회장 및 임원) 동아리연합회의 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 한다.

①동아리 연합회의 회장 및 임원은 동아리 연합회에서 선출한다.

②동아리 연합회장은 동아리에 관한 제반 문제에 한해서 집행부에 참석 자격을 갖

는다.

제32조(업무 및 권한) ①본 연합회는 대학 모든 동아리 행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동아리 등록, 동아리 연합회에 해당된 예산집행 및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33조(회칙)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연합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본 회칙과 상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가질 수 있다.

제34조(재정) ①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동아리 연합회의 예산은 학생회비의 예산 편성 내역에 책정되어야 한다.

③신규 동아리의 재정지원은 6개월 후 동아리연합회에 등록하기 전에는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자체 경비로 충당한다.

제7장 재 정

제3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로 한다.

제36조(회비) ①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본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③본회의 회비는 집행부에서 책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한다.

④총학생회비는 교무입학처에서 지도하며, 총학생회장이 집행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예산편성) ①총학생회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공고한다.

③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회장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39조(결산 및 감사) 집행부는 운영위원회에 매 학기말과 총선 직후에 결산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8장 선 거

제40조(선거시기) ①총·부학생회장의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11월중에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에 실시한다.

②기타 자치기구의 회장선거 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에 의한다.

제41조(선거권) 본 회의 회원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단, 휴학, 제적 및 정학 상태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42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아래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 한다.

1. 총학생회 정 · 부회장 및 운영위원장, 동아리연합회 정 · 부회장
 - 가. 2학기 이상 등록(2년제), 4학기 이상 등록(3년제), 6학기 이상 등록(4년제)을
필하고 재학 중인 자<개정 2016.3.4>
 - 나.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다. 유급 ·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개정 2014.3.5>
 - 라.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개정 2014.3.5>
 - 마.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개정 2014.3.5>
 - 바. 운영위원은 학생회장, 부회장 입후보시 5일 전에 운영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되지 않는 자의 피선거권과 선거는 별도 회칙에 따른다.

제43조(선거방법) ①본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로 한다.

②모든 회원은 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③총학생회 정 · 부회장은 공동 입후보하여 본 회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단독출마 시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선거관리비용) 선거관리비용은 공탁금으로 충당하고, 공탁금의 결정은 선관위에 위임하며, 당락에 관계없이 변환하지 않는다.

제45조(선거관리위원회) ①운영위원 추천 3명, 학생회 추천3명, 지도위원 1명, 일반학생 5명으로 구성하며, 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단, 지도위원 1명은 선거진행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의결권은 없다)

②시기 :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연도 선거공고 일로부터 15일전에 구성한다.

③입후보자 소속 학과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6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회장선거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9장 회칙 개정

제47조(발의) 본 회 회칙 개정은 총학생회장과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이상의 찬성 또는 본회 회원 20%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48조(의결) ①회칙개정 발의 시 운영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총회를 열고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본회 회칙 전면 개편 시에는 총학생회에서 의결한다.

제49조(공포 및 효력발생) 회칙 개정안은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총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공포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5년에 한하여 운영위원회를 9월중에 구성한다.
3.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 한다.